사채원리금 지급대행 계약서

(이하"위탁자"라 한다)가 (주)하나은행

지점(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사채의 원리금 지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의 수탁) 위탁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지급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

- 1. 사채의 명칭 :
- 2. 사채의 종류:
- 3. 사채의 권면총액:
- 4. 사채의 발행가액:
- 5.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6. 사채의 발행권종 :
- 7. 사채의 이율 :
- 8. 발행일 : 년 월 일
- 9. 상환기일 및 방법: 사채의 원금은 년 월 일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10. 이자지급기일:
- 11. 전화조건 :
- 1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 14. 원리금 지급보증기관 :
- 15. 연체이자

제2조(업무취급장소)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탁자 및

에서 취급한다.

제3조(업무처리의 준거 기준)

- ①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계약 각 항 이외에 관계법, 수탁자의 규정 및 위탁자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위탁자는 내규를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의 각 조항 및 관계 법규, 기타 내규의 해석과 업무집행 방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이 계약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장부 및 서류의 인도)

- ① 위탁자는 대행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 1. 사채의 발행에 관한 명세표 및 사채의 서식
 - 2. 사채원리금 지급 원부
 - 3. 인감부(무기명식 사채인 경우는 제외)
 - 4.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발행회사의 정관, 등기부등본
 - 5. 사고관계 문서

- 6. 기타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 ② 수탁자는 전항의 장부 및 서류를 대행업무 종료 후 위탁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때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사채원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무기명식 사채에 대하여는 사채권 및 이권의 소지자
- 2. 기명식 사채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채권자 또는 등록 질권자
- 3. 등록식 사채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채권자 또는 등록 담보권자

제6조(사채원리금 지급자금의 인도)

① "위탁자"는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대전(지급할 원리금 상당액)을 반드시 지급결제일 미결제 통보시각 이전까지 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본부 집중의 경우 제7조에서 지정한 사채원리금지급 출금계좌로 입금한다)

② "위탁자"는 입금 사실을 반드시 "수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금계좌 지정 및 담당자 지정)

- ① 출금계좌의 지정
 - 1.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지급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당행에 개설된 아래의 요구불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하고 위탁자의 사채원리금지급 용도로 사용한다.
 - 2. 사채원리금 출금계좌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지정용도
		사채원리금 출금

3.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수수료 출금계좌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지정용도
		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출금

- 4.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출금계좌 및 대행수수료 출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담당자의 지정: "위탁자"는 사채원리금 입금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담당자 변경 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자 성명	핸드폰 번호 (SMS 교환안내 수신번호)	회사 전화번호

제8조(지급대행 불능사실 통보)

위탁자가 원리금 지급기일의 영업마감 시각 2시간 전까지 지급할 자금을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는 지급불능의 사실을 지급보증기관(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탁기관(있는 경우에 한함)에 즉시 통보한다.

제9조.(사채권자의 확정)

- ① 사채원리금의 수령권자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자는 지급원부를 작성하여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지급원부를 제출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령권자의 인감부를 첨부하여 지급위탁서를 제출한다.
- ③ 본 건 사채가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사채 및 등록필증 일괄등록방식인 경우 제 1항 및 제 2항의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수탁자"의 승인하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수탁자"에 대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지급필 통지의 갈음)

- ① 수탁자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지급필 통지서에 이자지급을 필한 이권을 첨부하거나, 등록사채인 경우에는 출납인을 날인한 이자영수증을 첨부하여 차회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일괄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확인증을 교부한다.
- ② 수탁자가 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필 통지서에 원금상환을 필한 채권을 첨부하거나 등록사채인 경우에는 출납인을 날인한 이자영수증을 첨부하여 차회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일괄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확인증을 교부한다.
- ③ "수탁자"는 사채원리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며, "위탁자"는 지급필 통지 내역을 출금계좌의 인출 내역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
- ④ 본 건 사채가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사채 및 등록필증 일괄등록방식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수탁자"의 교부의무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의 사채원리금 이체확인서(이체영수증) 교부로 갈음한다.

제11조(통지 또는 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1. 소각을 위하여 사채를 매입한 때
- 2. 기한 전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 때
- 3. 차환 발행하게 된 때
- 4. 사채의 등록이 있는 때
- 5. 사채의 이전등록, 이기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있는 때
- 6. 원리금 지급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 7. 개인, 주소변경, 명칭변경 또는 법인대표자,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등의 선임, 변경, 해임 등의 신고가 있는 때
- 8. 사채에 대하여 공시최고 또는 제권판결이 있거나 사고신고 및 위조 또는 변조된 채권이 있는 때
- 9. 사채에 대하여 질권, 신탁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의 등록이 있는 때

제12조(수탁자의 면책)

- ① 전조의 통지 또는 신고가 있기 전에 수탁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하지 못한 위조 또는 변조 채권에 의하여 지급한 원리금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자동이체 지정계좌에 예금 압류, 지급정지 등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한 지급 불능 시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사채원리금 지급 기일에 "위탁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사채원리금 출금계좌에서 사채원리금지급 이외의 사유로 지급되어 계좌의 잔고가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대전보다 적은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채원부의 기재변경) 위탁자로부터 사채원부의 기재 변경이 수반되는 통지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는 사채원리금지급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령권자가 확정된 후에는 소유권, 질권, 신탁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은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경비부담)

- ① 위탁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는 수탁자의 수수료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한다. 위탁자는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수탁자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계약의 종결) 이 계약은 원금상환이 개시된 날로부터 __월이 경과하는 날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해지 통고함으로써 종결한다.

- 1.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채원리금 지급대행 업무규정 또는 본 계약 조항에 위배하여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 2. 사실상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제16조(종결업무)

- ①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종결한 때에는 종결통지서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계산서를 미지급 자금과 함께 종결일 익일부터 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 ② 위탁자는 전항이 종결통지서 접수 즉시 대행종료 확인증 및 수령증을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의 소정방법에 따라 다음 각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종결 년 월일
 - 2. 종결되는 대행업무의 내용
 - 3. 차후 대행업무의 취급방법
 - 4.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위탁자, 수탁자 각 1통씩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인) 수탁자 주식회사 하 나 은 행 지점